

주요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관련 법규와 실무에 관한 분석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Legal Theses Deposits in Major Other Countries

조 용 완 (Yong-Wan Cho)**

구 정 화 (Joung Hwa Koo)***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주요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관련 실무 분석 |
| II. 선행연구 분석 | V.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 |
| III. 주요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관련 법규 분석 |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의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과 제출 등에 관련된 법규와 국가도서관 및 학술유통기관의 학위논문납본 실무과정과 지침, 주요 대학들의 학위논문 납본 실무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를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실무측면에서는 KERIS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의 강화와 dCollection 시스템 운영의 개선과 더불어 전자학위논문 중심의 납본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학위논문, 법정납본, 납본시스템, 도서관법, 고등교육법, 국가도서관

ABSTRACT : The research aims to propose improvement to legal theses deposit system in S. Korea by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theses deposit systems in eight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Canada, Australia, France, Taiwan, Japan and S. Korea. The research used documentary research method including literature review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legal regulations, ordinances, practical processe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sis submissions at national libraries and academic institutional depositories, as well as practical cases of thesis submissions at major universities in each countr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key issues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and corresponding suggestions for solving the issues are presen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theses deposits systems, the research recommends legal amendments to the Library Law and Higher Education Law. On the practical side, the research proposes strengthening the legal foundation for KERIS, in collecting and providing theses,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dCollection system, and proposing a submission method focused on electronic theses.

KEYWORDS : Thesis and Dissertation, Legal Deposit, Legal Deposit System, Library Law, Higher Education Law, National Libraries

* 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의 법정납본에 관한 이슈>(2023. 12)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ngwan@cu.ac.kr / ISNI 0000 0004 6484 6697) (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oo@hnu.kr / ISNI 0000 0004 7881 5461)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2월 29일 • 최초심사: 2024년 3월 8일 • 게재확정: 2024년 3월 2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1), 145-172,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1.202403.145>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학위논문은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출되는 도서관자료를 의미한다. 현재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소속대학의 학칙 등에 박사학위논문 제출과 공표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물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추가 이수하거나 학술지 투고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의 국회도서관법이나 대만 등의 관련법규에서는 석사학위논문도 국가적 지식자원으로 인정되어 인쇄 및 전자형태로 법정납본 또는 국가적인 수집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납본 또는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는 국가도서관, 고등교육 학술정보유통기관, 대학도서관, 대학원, 학위논문 저자 등 이해관계자간에 학위논문 법정납본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증언에 따르면(이충훈, 김승철, 이문형, 2023), 현재 학위논문 제출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학위논문 저자, 대학원, 도서관간의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간의 혼선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량과 비효율적인 업무관행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국가적 자원공유에서도 대학도서관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 학위논문은 작성자가 소속 대학의 도서관과 법정납본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으로 인쇄본을 제출해 왔고, 대학도서관에서는 법정납본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2007년까지 기관저장소이자 디지털 학위논문유통시스템인 <dCollection>을 전국 대학에 보급하면서 학위논문의 디지털 파일 제출 및 제공이 보편화되었다.¹⁾ 이로 인해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 작성자를 대행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인쇄본 논문을 제출하는 한편, 디지털 파일과 관련 메타데이터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제공하는 등 기관별, 매체별 중복 납본으로 인한 업무과중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내 250여개 이상의 대학이 KERIS의 dCollection 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을 수집·제공하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중복적으로 학위논문 DB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고자 전자파일 납본을 강제하는 것은 자원과 인력의 낭비라는 주장들도 거듭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김진호, 2022).

더 근본적으로, 법정납본 관련 법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학위논문의 납본에 관한 혼란이 증가하고 있다. 즉, 국회도서관법과 달리 도서관법상 법정납본 조항에서 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학위논문이 납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초래하고 있다. 2022년 10월 도종환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keris.or.kr/main/cm/cntnts/cntntsView.do?mi=1149&cntntsId=1242> (2023-08-24)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대학교의 인쇄본 납본율 평균은 95%, 디지털 파일 납본율 평균은 90%인 반면, 서울대의 인쇄본 학위논문 납본율은 2017년 89.2%, 2018년 85.1%, 2019년 87.3%, 2020년 36.8%, 2021년 0%, 디지털 파일 납본율은 2017~2019년 0%, 2020년 17.3%, 2021년 29.7%로 저조했으나²⁾ 도서관법의 납본대상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납본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일부 도서관은 저작권법 조항에 따라 법정납본 기관에 전자파일 제출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와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조항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없이 학위논문 전자파일을 제3자인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진호, 2022).

이처럼 학위논문 납본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련 법규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학위논문의 법정납본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학위논문 법정납본 또는 국가적인 수집에 관련된 법규와 실무와 관련 시스템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파악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에 관한 법규와 실무에 있어서의 개선책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들이 임의로 선정한 한국, 일본, 대만,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8개국의 학위논문 법정 납본 또는 국가적인 수집에 관련된 법규와 실무에 관한 것들이다. 연구자들은 이 국가들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 여러 대륙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국가적인 납본업무를 활발히 수행해왔기에 학위논문 납본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법규는 학위논문 법정납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지침 등과 함께 학위논문 공표에 관한 고등교육 관련 법률, 시행령, 지침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분석대상 실무는 학위논문 법정납본 또는 수집을 주관하는 국가도서관이나 고등교육 학술정보 유통기관을 위주로 분석하였고, 실제 국가적 납본이나 수집에 참여하고 있는

2) 대학지성 In & Out 홈페이지.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7> (2023-08-24):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학위논문 전자파일 납본 지침>을 제정(2021. 10. 28)하고 2021년 2월 졸업자부터 책자 논문의 제출을 중단하고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고 있다.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학위논문 전자파일을 납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데,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개정(2020.12.2. 시행) 이후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제출된 석·박사 학위논문 전자파일 중 학위논문 저작자가 납본 동의를 한 논문에 한하여 전자파일 1부를 각각 납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각 나라의 일부 대학도서관들도 보완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표 1〉 참조).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위논문 납본이나 수집에 관한 연구, 각 국의 법률정보 웹사이트, 국가도서관이나 고등교육 학술정보 유통기관과 단체, 업체, 그리고 대학도서관과 대학별 기관저장소(repository) 웹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 등에서 부족한 부분은 국내의 주요 대학도서관과 국가도서관, 전문도서관 사서와 고등교육 학술정보 유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 면담을 수행하였다.

〈표 1〉 학위논문 납본/수집에 관련된 분석대상 법규와 주요 기관

국가	분석 법규(법정납본)	분석 법규(고등교육)	분석대상 주요 기관
한국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국립중앙도서관, KERIS(dCollection)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학교교육법, 학위규칙	국립정보학연구소(NII), 학술기관저장소데이터베이스(IRDB)
대만	도서관법	학위수여법, 관련 지침	국가도서관, 대만박사석사논문지식부가가치시스템
프랑스	문화유산법전	교육법전 및 시행령	고등교육서지기구(ABES), 고등교육 관련 민간단체(ADUM)
미국	저작권법	-	미국의회도서관, ProQuest
캐나다	국가도서관 및 기록관법	-	캐나다 국가도서관 및 기록관(LAC), Theses Canada
호주	저작권법, 국가도서관법	-	-
영국	법정납본 도서관법	고등교육과 연구법	British Library, EThOS

II. 선행연구 분석

국내 학위논문 납본의 관리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납본과정의 현 단계 분석, 법규와 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한 재정비 촉구 등에 관한 연구들이 위주였다. 특히 온라인 환경의 도래로 인해 관련 연구의 주제는 온라인 디지털 형식으로 출간되고 유통되는 학위논문을 어떤 법적 근거와 정책에 따라 납본하여 관리·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져 왔다. 지난 20여년간(2000-2023) 국내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된 논문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 주제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 둘째, 학위논문 관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의 dCollection 개선을 논의한 연구, 셋째, 학위논문 납본과정과 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한 연구들이었다.

첫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저작권과 관한 연구 영역에서 정경희(2007)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 분쟁 및 고소 사건을 계기로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구분하는 방법과 비영리 저작물인 학위논문의 특성, 그리고 정부의 학위논문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위

논문은 분명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지만, 영리추구보다는 광범위한 배포를 통해 명성을 얻고자 하는 저작물임을 지적하며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정부의 저작물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충훈, 김승철, 이문형(2023)은 정경희, 이호신(2018)이 정리한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법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을 재인용하며, 학위논문의 저작권은 일차적으로 논문을 작성한 학생에게 있기에,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저작권법(제2조 25항)이 보장하는 개인의 공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과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보완을 제안하였다. 또한 dCollection 시스템 상에서 학위논문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선택을 강요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학위논문 납본시, CCL선택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시스템적으로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위논문 법정납본에 관한 법규를 연구한 논문은 아직 전무하고 대부분 출판물 전체에 대한 법정납본 규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논문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윤희운(2002; 2003), 노영희(2009), 김나영, 오일석(2016), 서혜란(2003) 등의 연구들은 국내 납본 규정 및 절차뿐 아니라 국외 여러 국가들의 납본제도와 규정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납본 제도와 업무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히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조용완(2021)도 국내외의 법정납본 법규의 특성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학위논문관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KERIS의 dCollection 시스템의 개선을 논의한 연구들이다. 이충훈, 김승철, 이문형(2023)은 dCollection이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기보다 기관저장소의 역할을 고려해 설계되었기에 학위논문 납본 전용시스템으로 활용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다른 dCollection 관련 선행연구들(김현희 외, 2005; 김현희, 정경희, 김용호, 2006b)도 학위논문 수집에 있어 대학원과의 업무 분담과 협업이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업무가 발생하며, 도서관이 서지사항을 생성하고 제어하는데 있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dCollection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학위논문 납본과 관리를 위한 업무가 간소화되고 시스템 또한 일원화, 통합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위논문 납본과정과 관리체계에 걸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다. 윤희운(2004a)은 국내 학위논문의 유통현황 및 관리시스템을 분석하여 전자학위논문(ETDs)의 파일 포맷에 대한 지침이 부실하다는 점, 저작권 처리 과정과 양식이 일괄되지 못한 점, 아카이빙과 접근방식에 있어 상호운용성이 없어 원문서비스 및 접근에 제약이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윤희운(2004b)은 학위논문 제출과 이용에 관련된 과정을 분석하여 학위논문 납본과 관리를 위한 표준관리모형(Korean Electronic Dissertation Systems, KEDS)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학위논문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법제와 정책을 보완할 것, 온라인 환경에 맞도

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모든 대학원이 ETDs 제출의 의무화 방향으로 학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현행 납본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승민(2019)은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된 대학도서관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위논문 납본을 위한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에 관해 미비하였고, 중복된 납본 업무로 인력의 낭비가 심하며, 대학 내 납본 정책의 미비와 저작권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납본법 제정 및 디지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 통합 납본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통한 중복업무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학위논문 납본 제도와 관련된 현 단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연합회의 이슈기획 논문(이충훈, 김승철, 이문형, 2023)에서는 학위논문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업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대학원과의 협업 문제, dCollection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한 현장 사서들의 고충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학위논문 납본업무 개선을 위해 납본법을 제정할 것, 국가적 학위논문 디지털 납본체계를 dCollection으로 단일화 및 고도화 할 것, 학위논문 취급원칙(저작권 등)과 관리지침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하여 학계와 현장에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면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디지털 저작물의 활발히 생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 학위논문을 기초로 납본체계의 전환의 필요성도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학위논문 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실무활동을 분석하여 국내외 학위논문 납본 법규와 실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주요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관련 법규 분석

국내 도서관법에서는 납본을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유네스코에서는 법정납본을 “복본 형태의 출판물을 간행하려는 개인이나 상업적 또는 공공적 조직 등이 지정된 국가기관에 1부 또는 그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의무”(Lariviere, 2000, 3)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법과 저작권법, 법정납본 법률 등 자국 내 출판물들이 국가도서관으로 제출되는 일반적인 법정납본 법규를 학위논문 납본조항이 포함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법정납본 대신 고등교육 법규를 통한 학위논문 공표과정에서 국가도서관이나 국가적 고등교육 학술정보 유통기관 등이 학위논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규들도 포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법정납본 법규에 학위논문의 납본 대상 명시 여부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국가의 법정납본 관련 법규에서 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에 명시되었는지를 정리하였다(〈표 2〉 참고). 각 나라의 법정납본 관련 법규는 포괄적인 도서관법이나 국가대표 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 관련 법규,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법규, 저작권 관련 법규, 법정납본도서관 법규 등으로 나타났다. 이 법규들은 법정납본 대상 자료와 제외되는 자료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납본대상에는 대체로 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학위논문의 경우, 한국의 국회도서관법[법률 제19537호, 개정 2023. 7. 11]을 제외하면 다른 법규에서는 납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반면, 각 국의 법정납본 관련 법규에서 납본 제외 자료들은 대부분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업적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들로 국한되어 있으며, 학위논문이 명시적으로 납본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없었다. 이처럼 학위논문은 한국의 국회도서관법을 제외하면 조사대상 국가의 법정납본 관련 법규상 납본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동시에 납본제외 대상에도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대상 국가 중 일부는 의무적인 법정납본이 아닌 고등교육 관련 법규의 학위논문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학위논문을 수집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도서관법[법률 제19592호, 개정 2023. 8. 8]과 동법 시행령의 법정납본 조항에 학위논문이 납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법령에 의해 법정납본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지침〉(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 제정 2019. 7. 1. 개정 2022. 12. 19)에서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을 납본대상 자료 유형 중 학술연구자료에 포함시키며 포괄적으로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납본 부수는 1부로 명시하였다. 즉, 도서관법에 학위논문이 납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학위논문을 법정납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Law, 개정 Mar. 1, 1989)⁴⁾ 제407조 의회도서관을 위한 사본 또는 음반의 납본(Deposit of copies or phonorecords for Library of Congress)과 제408조 저작권 등록 일반(Copyright registration in general) 등에 국가도서관 관련 납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인 연방정부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Title 37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중 Part 202 조항에 의회도서관 법정납본과 저작권등록용 납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그 시행령에는 미국 내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저작물을 법정납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3)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국립중앙도서관, 2021 개정판)에서도 국내 학위논문을 회색문헌에 포함시켜 원본 수집을 전제로 완전한 장서를 구축하고 온라인 이용도 극대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2022. 12. 20, 일부개정)에서는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자료의 수집)에 근거하여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전자 학위논문을 법정납본이 아닌 수집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Office of Law Revision Counsel: United States Code 홈페이지.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7-section407&num=0&edition=prelim\(2023-08-02\)](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7-section407&num=0&edition=prelim(2023-08-02))

학위논문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납본 제외대상에 상업적 또는 개인적 성격이 강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대상 여부는 모호하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의 <학위논문 수집 정책성명>(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Dissertations and Theses)을 살펴보면, LC는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을 가장 높은 수준인 5단계(포괄적 수집)로 수집하고 있는데, 미국 내 타 국가도서관인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립농학도서관이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영역의 박사학위논문은 수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과 소속 학생들이 박사학위논문을 ProQuest(구 UMI)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LC는 ProQuest를 통해 학위논문의 마이크로 폼과 디지털 파일을 제공받고 있지만, 최근 일부 대학이 자체의 기관저장소를 통해 학위논문을 수집, 공개하는 경우가 증가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LC는 박사학위논문을 중요 자료로써 광범하게 수집하나 저작권법 제407조에 의한 법정납본이라기보다 제408조인 저작권 등록을 위한 납본(주로 ProQuest가 대행)을 이용해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조사대상 국가들의 학위논문 법정납본 관련 법규 비교

국가	관련법규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관련 조항	비고
한국	도서관법 및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주요 납본자료 유형: 도서, 연속간행물, 마이크로자료, 전자자료 등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지침: 학위논문은 법정납본 대상 • 국립중앙도서관 수집대상 온라인자료 고시: 학위논문 포함 	-
	국회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박사학위논문의 법정납본 명시: 인쇄 2부와 디지털 파일 모두 납본(국회도서관 운영규칙에도 명시) 	-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주요 납본자료 유형: 도서,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영화필름, 음반, 전자자료 등 	학교교육법/학위규칙으로 학위논문 수집
대만	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주요 납본자료 유형: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시청각자료, 디지털미디어, 네트워크 자원 등 	학위수여법으로 학위논문 수집
프랑스	문화유산법전 및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주요 납본자료 유형: 인쇄, 사진, 음반, 시청각, 멀티미디어, 전자자료 등 	교육법전/시행령으로 학위논문 수집
미국	저작권법 및 시행령 (연방정부 규정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주요 납본자료 유형: 미국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납본예외: 건축도면, 그림엽서, 저작권국의 납본요청 이전인 온라인 전자자료, 개인 강의/설교/연설, 광고용 라벨, 인쇄물, 물품 등) • 저작권법의 의회도서관 법정납본보다는 저작권등록용 납본조항으로 수집 	학위논문 수집정책 성명: 박사학위논문을 포괄적으로 수집(ProQuest를 통한 저작권등록 관행 활용)
캐나다	국가도서관 및 기록관법 및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주요 납본자료 유형: 캐나다 내 이용 가능한 모든 출판물(1부 납본: 음악녹음, 멀티미디어, 100부 미만, 온라인 출판물 등. 요청시 납본: 행사 프로그램, 시간표, 광고, 회의록 등) 	-
호주	저작권법, 국가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주요 납본자료 유형: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 온라인/전자자료 등 • 전자출판물 납본지침: 납본 제외대상에 음성/영상자료, 게임 자료, 인터넷 공유 자료, 업무상 트랙백션 기록 등(학위논문은 불포함) 	-
영국	법정납본 도서관법 및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법정납본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주요 납본자료 유형: 도서, 활판인쇄물, 악보 지도, 도면, 차트 또는 도표, 전자자료 등 	-

2. 법정납본 법규 내 납본 미준수 벌칙에 대한 학위논문 적용 여부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국가의 법정납본 관련 법규에서 법정납본 미준수에 관해 어떠한 벌칙이 적용되는지, 이것이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국가들의 법규에서는 법정납본 미준수에 관한 벌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미납본에 대한 벌칙은 국내 법규보다 외국 법규에서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 조사대상 국가의 법정납본 미준수에 대한 벌칙

국가	납본 미이행 벌칙
한국	• 도서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해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으로 나누어 각각 자료 정가(비매자료는 자료의 원가)의 3배, 6배, 10배 금액으로 부과 • 국회도서관법: 법정납본 조항에는 벌칙이 포함되지 않음
일본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의 2: 미납본시 소매가의 5배 과태료
대만	• 도서관법 제18조: 납본 통지 후 미완료시 판매가의 10배 벌금
프랑스	• 문화법전 제L133-1조: 미납본시, 75,000유로(환화 약 1억원) 벌금
미국	• 저작권법 제407조 (d): 저작물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
캐나다	• 국가도서관 및 기록관법 제20조: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개인은 5천 CAD(캐나다달러) 이하, 법인은 10만 CDA 이하)
호주	• 저작권법 195CB: 10 과태료 유닛(penalty unit) = 2,100 호주달러
영국	• 법정납본도서관법 제3조, 제7조: 납본의무 준수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소송 제기 또는 납본 원수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도서관에 지불하도록 명령

이어 이 벌칙조항이 학위논문 납본에 관해서도 적용되는지 조사하였다. 학위논문이 법정납본 대상이고 미납본 벌칙 조항들이 예외없이 적용될 경우, 학위논문을 미납본한 학위논문 저자에 대해서도 관련 벌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하지만, 미납본 벌칙의 적용 사례를 찾고자 주요 검색사이트와 학술논문, 외국의 주요 법률 데이터베이스(NEXIS/LEXUS) 등을 검색하였으나, 미납본 벌칙조항이 학위논문 저자에 대해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미국의회도서관과 미국 내 한 대학도서관의 사서에게 법정납본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학위논문 수집을 위해 노력하지만 학위논문 납본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응답하였다.⁵⁾ 영국과 미국의 학위논문 납본 관리체계를 분석한 연구들(Afori & Feldman, 2022; Gould, 2016)에서도 (박사) 학위논문은 사실상 법정납본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납본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즉, 영미권 국가 등에서는 학위논문이 애초에 법정납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기에 미납본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법정납본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는 국회도서관법과 달리 도서관법에서는 납본 대상자료를 미납본할 경우, 제5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법에서

5) Boley Law Library의 'Online Reference Chat Service'에서의 사서 응답(2023. 10. 13); Library of Congress의 'Ask A Librarian Service'에서의 사서 이메일 응답(2023. 10. 17); University of Urbana-Champaign Library의 'Ask Reference Service'에서의 사서 이메일 응답(2023. 10. 24)

학위논문의 납본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관련 지침에서 납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학위논문 미납본에 따른 벌칙조항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2021년 인쇄본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의 미납본이 있고, 서울대는 대부분 미납본인 상황을 발견하였지만⁶⁾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인터넷과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학위논문 미납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⁷⁾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최근 3년간의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해 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법정납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 과태료 조항은 일반적인 출판사를 비롯해 다수의 도서관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며, 1회로 마무리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저자를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 국가(한국과 영어권 국가)에서는 법정납본 미준수에 대한 벌칙조항이 학위논문에 사실상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고등교육 관련 법규를 통한 국가적 학위논문 수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사대상 국가 중 일부에서는 고등교육 관련 법규에 포함된 학위논문 제출과 공표 관련 조항을 이용해 국가적으로 학위논문을 수집하는 사실상의 납본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8개국의 고등교육 관련 법규에 포함된 국가적인 학위논문 수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표 4〉 참고). 그 결과, 일본, 대만,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 관련 법규를 통해서 학위논문에 대한 사실상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박사학위논문의 공표를 명시하였으나 세부 공표방법은 마련되지는 않았다.

일본은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令和四年法律第七十六号による改正) 제104조에서 대학원을 설치한 대학 등은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세부사항은 문부과학성령인 〈학위규칙〉(学位規則)에서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박사학위수여자는 1년 내에 해당 박사학위논문의 전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문부과학성 “학위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学位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施行等について(通知)』(2013. 3. 11. 24文科高第937号))⁸⁾에서는 최근의 오픈엑세스 등을 감안하여 박사논문 요지, 논문 심사결과, 박사논문 전문 등을 가급적 기관저장소를 통해 공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교교육법과 관련 규칙 등을 통해 일본에서는 학위수여 대학과 국립국회도서관, 국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NII) 등이 협력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수집하여 납본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6) 대학지성 In & Out, 서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에 논문 납본 안내(2022.10.19).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7> (2023-08-24)

7)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납본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2023. 11. 09.).

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a_menu/koutou/daigakuin/detail/1331790.htm (2023-08-13)

대만의 경우, 정보의 디지털화, 저장 매체의 변화, 전송 및 저장의 추세에 대응하고, 학문적 성과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학위수여법〉(學位授予法, 民國 107年 11月 28日 修正)을 제정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논문을 국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제16조 학위논문 납본 조항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을 대학을 경유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국가도서관 및 소속 학교 도서관에 제출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서관이 학위수여법 제16조에 따라 수집된 학위논문을 국가도서관이 완전히 보관하기 위해 “학위논문의 국가도서관 송부 및 보존하는 작업의 요점”(學位論文送存國家圖書館典藏作業要點 2020년 7월 23일 國圖事字第10901001722號令修正)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각 대학이 매 학기마다 학위논문을 전자파일로 국가도서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송부 방법은 “대만 박사석사논문 지식가치시스템”(臺灣博碩士論文知識加值系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가도서관이 지정한 FTP 컴퓨터 호스트에 업로드, 이미지 및 비디오 파일을 학위논문 전자파일과 함께 광디스크에 담아 국가도서관으로 우편 송부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대만의 학위수여법과 관련 지침 등이 전자 학위논문을 국가도서관에 제출,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도서관이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대만 교육부의 소속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전과 시행령은 법정납본 일반과 납본대상 자료 등을 명시하고, 문화부장관이 법정납본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령에는 학위논문이 납본대상 자료로 명시되지 않았다.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05, 6-7)은 19세기 초부터 법정납본을 위주로 프랑스 박사학위 논문을 수집해왔으나 광범하지는 않았다. 대신 프랑스는 문화유산법전이 아닌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과 하위법령을 통해 국가적으로 학위논문을 수집해왔다. 교육법전의 “제2장 고등교육의 발전” 내 “L612-7조”(2020년 12월 24일자 개정)에는 박사과정 교육의 책임소재와 박사학위 이수 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 정부의 고등교육 및 연구부 장관은 〈(교육법전 조항 L612-7에 의거) 국가 교육 프레임워크 및 국가 박사학위 수여 절차를 설정하는 2016년 5월 25일자 명령⁹⁾ 내 “제4장 발표된 박사논문 또는 저작물의 제출, 보고, 배포 및 보존”(제24조, 제25조)¹⁰⁾ 조항을 통해 박사논문 작성과 제출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중 제25조에서는 박사과정 운영기관은 정부가 〈고등교육 서지기구〉(Agence Bibliographiqu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BES)¹¹⁾를 통해 개발한 전자 박사학위논문 제출과 아카이빙을 위한

9) Arrêté du 25 mai (2016), fixant le cadre national de la formation et les modalités conduisant à la délivrance du diplôme national de doctorat, vena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L612-7 du Code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포털.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2587086> (2023-09-28))

10) Dépôt, Signalement (2022), Diffusion et Conservation des Thèses ou des Travaux Présentés (Articles 24 à 25)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32588117 (2023-09-28)

11) 1994년 고등교육 서지기구 설립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ABES는 대학도서관 등 고등교육을 위한 서지정보 유통기관으로 고등교육 및 연구부 장관의 직접 감독을 받는 공공행정기관(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administratif)으로, 한국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ABES는 관련법령에 의해 프랑스 내 박사학위논문 제출과 수집, 이용 과정에서 중요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시스템을 개발, 운용하고 있음. (ABES 홈페이지. <https://abes.fr/en/l-abes/presentation>)

〈STAR〉 시스템¹²⁾에 전자 학위논문과 관련 양식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ES는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3년 단위의 협약을 통해 학위논문을 비롯한 도서관자료의 메타데이터 제공, 프랑스 내 모든 도서관의 공동목록인 〈Catalogue collectif de France〉(CCFr) 운영 등에 협조하고 있다.¹³⁾

우리나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51조(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조항에서 박사학위 수여자는 1년 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¹⁴⁾ 하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현재 제51조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는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인 상태로 나타나 박사논문 공표 방법에 관해 세부규정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국가에서도 법정납본을 통한 학위논문 납본 대신에 고등교육 관련 법규를 통해 국가적으로 학위논문을 수집하였지만, 앞의 일본, 대만, 프랑스와 차이를 보였다.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등은 국가적 차원 또는 주/준주 차원에서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을 통해 학위논문 공표와 수집 등을 각 대학에 위임하였다. 그 중 캐나다와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자 학위논문 수집과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학위논문을 수집하였으나 미국과 호주는 학위논문 납본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국가적인 수집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았다.

먼저, 캐나다의 경우, 연방 법령 중 고등교육 학위수여에 관한 법률은 없고, 〈Canada Student Loans Act〉, 〈Canada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ct〉와 같이 고등교육 학생의 대출과 재정 지원 관련 법률만 존재하였다. 대신, 주(province)와 준주(territory) 차원의 고등교육 관련 법률에 학위수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대학법〉(University Act) 제2장 학위수여의 권한(Part 2-Power to Grant Degrees)에는 각 대학이 학위수여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었고, 앨버타 주의 〈고등교육 학습법〉(Post-Secondary Learning Act)의 제9조 총장의 임무(Duties of Chancellor)와 제26조 교무위원회의 권한(Powers of general faculties council) 부분에는 학위 제정과 수여에 관한 권한을 대학이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노스웨스트 준주의 〈고등교육법〉(Post-Secondary Education Act)의 제4장 대학(Universities)에도 대학이 학위수여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¹⁵⁾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연방 차원이 아닌 주와 준주의

12) STAR 시스템은 배포와 보존 형식으로 검증된 버전의 학위논문 파일과 해당 메타데이터의 등록, SUDOC(Système Universitaire de documentation, 프랑스 대학도서관 종합목록 시스템)을 위한 목록 작성 및 프랑스 박사학위논문 검색포털인 theses.fr 플랫폼으로 제출, 영구 식별자의 할당 등의 기능을 수행.

13) Dhérent, Catherine (2012). BNF et ABES: un partenariat revisité et consolidé. Arabesques, 65
<https://publications-prairial.fr/arabesques/index.php?id=1358&file=1> (2023-10-01)

14) 저작권법 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5) British Columbia 홈페이지.

https://www.bclaws.gov.bc.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0_96468_01 (2023-09-11);
Alberta King's Printer 홈페이지.

법률을 통해 학위수여의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다 내 각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학위논문의 제출과 공표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호주는 연방 법률인 <고등교육지원법 2003>(Higher Education Support Act 2003, 개정 2023. 6. 29)이 있지만, 이 법은 고등교육 등에 대한 정부지원, 장학금, 대출제도, 학생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학위논문의 제출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¹⁶⁾ 호주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주(state)와 준주 차원의 고등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위수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뉴사우스웨일즈주 대학법 1989>(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ct 1989)의 제6조 “대학의 목적과 기능”에 대학의 주요기능으로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 수여가 포함되어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대학법 1990>(South Australia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ct 1990)의 제6조 “대학의 권한”에도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위 등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도 캐나다처럼 주와 준주의 법률을 통해 대학에 학위수여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호주 내 각 대학들은 학칙에 의거해 학위논문 제출과 공표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고등교육을 위한 새로운 체계 마련과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지원, 연구 부문의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과 연구법 2017>(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 2017, 제정 27th April 2017)을 제정하였다.¹⁷⁾ 그 중 제1장 “학생지원사무국”(The Office for Students, 이하 OfS)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와 경쟁을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인 OfS가 대학 등에 학위수여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도 캐나다와 호주와 같이 학위논문의 공표와 제출은 대학별 학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끝으로, 미국도 연방 법률인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1965, 개정 March 15, 2022)¹⁸⁾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대학의 교육 자원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석사나 박사학위 수여 요건과 학위논문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교육부가 미국 교육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안내서 <미국 교육시스템의 구조>(Structure of the U.S. Education System)¹⁹⁾ 중 ‘연구 박사의 설명(Research

https://kings-printer.alberta.ca/1266.cfm?page=p19p5.cfm&leg_type=Acts&isbncn=9780779842483&display=html (2023-09-12);

Government of Northwest Territories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nt.ca/en/legislation/#gn-filebrowse-0:/p/postsecondary-education> (2024-02-14)

16) Australia Government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홈페이지.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2C00005> (2023-09-02)

17) 위키피디아.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 2017.

https://en.wikipedia.org/wiki/Higher_Education_and_Research_Act_2017 (2023-10-26);

The Official Home of UK Registration 홈페이지.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7/29/part/1/enacted> (2023-09-18)

18)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홈페이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765/pdf/COMPS-765.pdf> (2023-10-23);

University of Wyoming. <https://www.uwyo.edu/stateauth/higher-ed-act/index.html> (2023-10-23)

Doctoral Description)²⁰⁾ 부분에서 박사논문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대학원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후보자는 학위논문 작성 후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하며, 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인준과정을 거친 후 논문을 출판하여 대학에 납본하고 학계에도 전자문서를 제공하는데, 많은 학위논문들이 수정과 편집과정을 거쳐 학술논문으로 형태로 상업적으로 출판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수업 이수와 종합시험, 학위논문 작성 및 심사, 소속대학에 학위논문 제출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사대상 국가의 대부분이 법정납본 관련 법률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관한 연방 또는 주/준주 차원의 법률에 따라 학위논문을 국가적으로 수집하여 사실상의 납본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중 한국, 일본, 대만, 프랑스 등이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위논문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나머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학위수여의 권한을 대학에 일임하여 대학이 학칙을 통해 학위논문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조사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제출/공표에 관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 검토

국가	법령	학위논문 제출/공표에 관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과 조항	비고
한국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취득자: 1년 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학위논문 공표 의무 현재 박사논문 공표에 관한 세부규정이 미비한 상태 	박사논문만 대상
일본	학교교육법, 학위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규칙: 박사학위취득자는 1년 내 박사학위논문의 전문을 공표 문부과학성 “학위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대해서”: 박사학위논문을 인터넷으로 공표 학위규칙에 따라 국립국회도서관, 국립정보학연구소, 학위수여대학(도서관)간 협력으로 박사논문 수집 	박사논문만 대상
대만	학위수여법, 관련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수여법: 박사/석사학위취득자는 학위논문을 학교를 경유해 전자파일로 국가도서관(교육부)과 소속 대학 도서관에 제출 학위논문의 국가도서관 송부 및 보존 작업요점: <대만 박사석사논문 지식가치시스템>에 온라인 제출 	석사/박사 논문 대상
프랑스	교육법전 및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법전: 박사과정 교육책임, 박사학위 이수과정 기술 국가 교육 프레임워크 및 국가 박사학위 수여절차를 설정하는 2016년 5월 25일자 명령: 박사논문 제출, 보고, 배포, 보존 규정 정부(고등교육 및 연구부) 산하 ABES(고등교육 서지기구)를 통해 학위논문 수집과 보존 	박사논문만 대상
미국	법령X, 대학별 학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학위논문 관련 조항 없음 미국 교육부 안내서: 학위수여는 대학의 학칙에 따름 	-
캐나다	법령X, 대학별 학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법률 중 고등교육 학위수여 관련 법률은 없음 주/준주별 고등교육 법률에 학위수여 내용 포함: 대학이 학위수여 권한 보유 학위논문의 공표: 학칙에 포함 	-
호주	법령X, 대학별 학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법률 중 고등교육 학위수여 관련 법률은 없음 주/준주별 고등교육 법률에 학위수여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대학이 학위수여 권한 보유 학위논문 공표: 학칙에 포함 	-
영국	법령X, 대학별 학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과 연구법 2017: 학위수여 권한을 대학에 부여 학위논문의 공표: 학칙에 포함 	-

19) U.S. Department of Education(미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us/international/usnei/us/edlite-structure-us.html> (2023-08-12)

20)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홈페이지.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us/international/usnei/us/doctorate.doc> (2023-08-12)

IV. 주요국가의 학위논문 납본 관련 실무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 납본에 관한 실무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 8개국이 국가도서관 또는 국가도서관과 연계된 공적 기관이 국가적 범위에서 학위논문의 납본 또는 수집(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6개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표 7〉 참고). 그 외 미국은 의회도서관 소속의 저작권국에서 ‘전자 저작권관리 시스템(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and Deposit System, CORDS)’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등록을 희망하는 학위논문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이 대상이며 저작권 등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호주는 NED(National edposit)라는 전자납본시스템을 운영하지만 학위논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 출판사의 일반적인 도서 등의 납본을 위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적 전자 학위논문시스템의 운영주체에 대해 살펴보면, 대만, 캐나다, 영국은 국가도서관이 직접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국, 일본, 프랑스 등은 국가 혹은 공적 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국가도서관과 연결하여 학위논문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 측면에서 연계하고 있었다. 수집 대상 학위논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 대만, 캐나다는 석사와 박사논문 모두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영국은 박사논문만 수집하고 있다. 기타사항으로, 국가도서관 또는 고등교육 학술정보 관련기관들이 대학으로부터 전자 학위논문의 메타데이터와 원문을 입수하는 방법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고시 또는 대학들과의 개별 협약 등이 있었다.

조사대상 국가의 전자 학위논문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의 법정납본 규정,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지침 등을 통해 인쇄본 제출과 디지털 파일 제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전자 학위논문의 납본 또는 제출은 KERIS가 각 대학도서관에 보급한 기관저장소인 <dCollection>을 통해 진행되는데, KERIS는 먼저 각 대학들로부터 dCollection 참여동의 신청을 받은 다음, 매 학기마다 각 대학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의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제출받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전자 학위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정납본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년 2회에 걸쳐 공문형태로 각 대학에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납본(인쇄자료 및 디지털 파일 각 1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이후 각 대학들은 독자적인 인쇄본 납본과 별도로 학위논문 파일 납본과 관련해 국립중앙도서관(자료수집과)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납본 협조 및 서비스 제공 동의 공문²¹⁾을 발송(최초 1회만)하면 이에 근거해 KERIS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매년 2회 메타데이터 발송 및 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한 주소를 제공한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학위논문의 인쇄본 납본은 중단하고 KERIS를 통한 디지털 파일의 납본만을 추진하고 있는데, 〈표 5〉와 같이 dCollection 미참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직접

21) 공문 내 포함되는 내용은 ① 우리 대학의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고 ② 우리 대학이 제공한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서비스하는 것에 동의하니, KERIS에서 파일 다운로드 URL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납본(메일, 웹하드 등)을 폐지하고 KERIS를 통한 납본(파일 다운로드 URL 제공)으로 일원화하되, 대학에서 파일 공개 동의시,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외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²²⁾²³⁾

〈표 5〉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 방침 변경안(출처: 관련공문)

구분	현행	변경
납본 방법	직접 납본(메일, 웹하드 등)	KERIS를 통한 납본으로 납본경로 일원화
	KERIS를 통한 납본 (KERIS로부터 파일 다운로드 URL 제공)	
공개 범위	비공개 아카이빙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서비스

일본의 경우, 국립국회도서관은 NII, 학위수여 대학(도서관) 등의 협력에 의해 전자 학위논문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학위규칙과 문부과학성 지침 등에 근거해 대부분의 일본 내 대학들은 학위수여자의 박사학위논문을 NII와 연계된 기관저장소에 공표(학위논문의 메타데이터와 원문 파일 업로드)하는데, 이 메타데이터와 원문 파일은 NII의 <학술기관저장소 데이터베이스>(Institutional Repository DataBase, IRDB)가 각 기관저장소에서 자동 수집하며, 국립국회도서관은 IRDB로부터 수집대상 박사논문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여기에 근거해 박사학위논문의 원문파일을 수집한다. 학위수여 대학 등이 국립국회도서관으로 박사논문 데이터를 별도로 송부할 필요가 없어 이 방법이 권장된다. 만일 NII의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에 대응하지 않는 기관저장소나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박사논문 전문을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국립국회도서관의 송신 시스템을 이용해 학위수여 대학 등이 메타데이터와 박사논문 파일을 제출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논문 전문을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송신시스템으로 전자파일을 송신하거나 전자파일이 없다면 인쇄물을 국회도서관으로 송부한다.

대만의 경우, <학위수여법>에 따라 박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을 국가도서관과 소속 대학 도서관에 전자파일과 함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만 교육부가 산하의 국가도서관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대만 박사석사논문 지식부가가치시스템>에 학위논문 전자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학위논문 전자파일(또는 압축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학위논문 전자파일을 국가도서관이 지정한 FTP 컴퓨터 호스트에 업로드하거나 학위논문의 그래픽 파일, 시청각 파일, 전자파일을 CD에 저장하여 국가도서관으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 등이 있다(曾淑賢, 2019, 16-18). 실제로 대만의 담강대학교²⁴⁾와 국립중앙대학교²⁵⁾의 학위논문 제출과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학위

22)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 방침 변경 안내> 공문(2021. 4. 19)

https://www.nl.go.kr/seoji/resource/form/user/napbon/book/online/online_napboneGuide.pdf (2023-09-24)

23)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와의 메일

24) 담강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수여법에 따라 학위논문 저자가 학위논문 파일을 대학의 전자 학위논문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대학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집, 보존하는 한편, 국가도서관으로 학위논문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ABES가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주제 제출부터 심사위원단이 승인한 박사학위논문의 제출, 박사학위논문의 이용 등의 과정에 맞는 국가적 시스템들을 개발, 보급, 운영하고 있다.²⁶⁾ 한편, 프랑스에는 ABES와 별도로 민간단체인 <콘택트협회>(Contact Association)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ADUM>(ACCÈS DOCTORAT UNIQUE ET MUTUALISÉ) 시스템이 2023년 현재 프랑스 내 105개 고등교육기관의 209개 박사학위과정에서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Contact Association, 2018, 8).²⁷⁾ 1999년 몽펠리에의 청년 박사들이 박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학생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ADUM은 박사과정이 개설된 프랑스 내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 논문작성 지원 기능을 비롯해 박사논문 작성 관련자 간의 소통, 협업 및 온라인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표 6> 참조).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ABES와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ADUM이 프랑스 내 박사과정 운영 기관에서 동시에 활용되다보니, 두 시스템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ADUM과 ABES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워크플로우와 ABES가 개발한 관련 스키마,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Morales, 2017).²⁸⁾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학위논문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ADUM에 등록하면 이름, 제목, 소속 대학, 요약 등의 정보가 ABES로 자동 전송되며, ADUM의 박사학위논문 파일은 ABES의 박사논문 검색엔진 <theses.fr>에도 게시된다(Guide D'inscription du Doctorant de L'enscm, 2018). Université de Bordeaux²⁹⁾ 과 Université Paris-Saclay³⁰⁾ 의 사례를 보면 박사과정 학생은 ADUM 계정을 필

<https://www.lib.tku.edu.tw/Front/Resources/Study/DissertationSubmission/Page.aspx?id=4XxsUoWQkLo=&Sn=317&lang=en> (2023-09-01)

25) 국립중앙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rapid.lib.ncu.edu.tw/libweek/guide> (2023-09-23)

26) ABES가 박사학위논문 수집과 이용에 관해 운영하는 국가적 주요 시스템에는 논문주제, 연구자, 지도교수 정보 등을 등록하는 STEP(Signalement des Thèses en Préparation), 전자 박사학위논문 제출과 아카이빙을 위한 시스템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STAR, ABES가 운영하는 프랑스의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 소속 도서관들을 위한 종합목록 시스템인 SUDOC, 프랑스 박사학위논문 검색엔진인 theses.fr, 다양한 박사학위논문 기여자(지도교수, 심사위원, 논문 저자 등)를 식별, 참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구식별자 데이터베이스인 IdRef,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데이터 교환과 배포를 위한 프랑스 전자 학위논문 데이터 모델인 TEF(Thèses Électroniques Françaises) 등이 포함된다. (ABES 홈페이지. <https://step.theses.fr> (2023-10-01))

27) Contact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s://www.contact.asso.fr/> (2023-08-26)

28) ABES 홈페이지. <https://abes.fr/en/reseau-theses/le-reseau>;
ABES 홈페이지.

<https://abes.fr/en/reseau-theses/outils-et-services-theses/administration-de-donnees-theses> (2023-10-01)

29) Université de Bordeaux 홈페이지.

<https://college-doctoral.u-bordeaux.fr/en/The-doctorate/Frequently-asked-questions2> (2023-08-26)

30) Université Paris-Saclay 홈페이지.

수로 개설해야 하며, 모든 박사과정 수업과 논문에 관한 정보를 입력, 갱신하며, 박사논문 파일도 제출하고 있다.

〈표 6〉 ADUM이 제공하는 이용대상별 주요 기능

대상	박사학위과정 학생	박사과정 운영 대학/기관	기업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과정 관련 정보에 접근 및 갱신 • 논문 및 연구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 저장 • 박사과정학생과 박사소지자 네트워크 참여 • 상담 및 교육 과정 확인 및 등록 •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포트폴리오 작성 • 온라인 정보 접근: 박사학위과정의 최신 소식, 취업 기회, 논문 발표 등 • 논문검색엔진 thèses.fr에 연구성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학생 및 소지자 정보 파악 • 정부부처 및 감독기관의 요청(통계 등)에 신속한 대응 • 박사학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 • 박사학위 학생 및 소지자의 역량프로필을 온라인에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공고 게시 • 검색을 통해 필요 역량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 발굴 및 연락

(출처: ADUM 홈페이지)

캐나다의 경우, 1965년에 캐나다 국가도서관 및 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이하 LAC)과 캐나다 대학협의회(Universities Canada) 회원인 약 70개 대학교 사이의 협력으로 설립된 〈Theses Canada〉가 참여 대학의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을 수집, 보존, 제공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으로 활용된다.³¹⁾ 참여대학은 학위논문 저자의 동의를 얻어 LAC가 그들의 학위논문을 수집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LAC와 “Theses Canada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Theses Canada〉는 인쇄본 학위논문은 수집하지 않고 디지털 학위논문만을 수집하는데, 참여대학이 오픈 액세스 기반의 기관저장소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LAC는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을 사용해 대학에 직접 논문을 수집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Theses Canada〉와 별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실제로 University of Toronto³²⁾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파일을 의무적으로 학위논문 등록시스템인 〈ProQuest ETD Administrator〉를 통해 기관저장소인 〈TSpace〉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출된 학위논문은 자동으로 〈Theses Canada〉에 전송되어 수집된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³³⁾도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은 ProQuest ETD를 통해 기관저장소 〈cIRcle〉에 전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논문 파일은 자동적으로 〈These Canada〉로 전송되어 수집된다.

<https://ens-paris-saclay.fr/en/research/doctorate/phd-lifecycle/phd-thesis-defence> (2023-10-11)

31) Library and Archives Canada(LAC) 홈페이지.

<https://library-archives.canada.ca/eng/services/services-libraries/theses/Pages/theses-canada.aspx> (2023-09-13)

32) 토론토대학교의 TSpace 홈페이지. <https://tspace.library.utoronto.ca/?refresh=true> (2023-09-22)

33)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UBC) 대학원 홈페이지.

<https://www.grad.ubc.ca/current-students/final-dissertation-thesis-submission> (2023-10-22)

영국은 고등교육 관련 기관 및 학술정보 유통 기관들이 협력하여 박사학위논문의 가시성과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 1월에 전자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인 <EThOS> (Electronic Theses Online Service, 전자 학위논문 온라인 서비스)³⁴⁾를 출범시켰다. 영국 국가도서관인 <British Library>(이하 BL)가 운영하는 <EThOS>는 영국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박사논문의 색인과 원문 구축을 위해 협력하며, <EThOS>의 참여는 대학과 BL간의 협약으로 진행된다. 또한 <EThOS>는 영국의 주요 연구기금 지원기관들을 대표하는 <영국 연구위원회>(UK Research Councils)의 연구보조금 약관³⁵⁾을 이용해 박사학위논문의 메타데이터와 원문을 구축하고 있다. <EThOS>는 박사학위논문 수집을 위해 OAI-PMH 수집 프로토콜을 사용해 연 6회 대학의 기관 저장소에서 학위논문의 메타데이터와 논문파일을 수집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학이 <EThOS> 저장소로 제출하도록 하여 수집하고 있다. 그 결과, <EThOS>는 2023년 9월 현재 영국의 모든 박사학위논문 중 97%에 대한 데이터(580,000건의 서지정보와 300,000건 이상의 원문)를 구축하였고 디지털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Oxford University³⁶⁾는 기관저장소 <ORA>를 통해 연구기반의 박사과 석사과정의 논문을 수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 연구위원회의 보조금 약관을 활용하고 있다. 이 약관에는 영국 연구위원회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박사학위논문의 메타데이터는 학위수여 즉시 기관저장소에 구축되어야 하며, 원문(full-text)은 학위수여 이후 최대 12개월 내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대학의 기관저장소에 구축된 전자 학위논문은 <EThOS>에 의해 국가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표 7> 조사대상 국가의 국가적 전자 학위논문시스템

국가	시스템	운영주체	대상	주요 사항
한국	dCollection	KERIS	석사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RIS와 대학간 협력으로 전자 학위논문을 수집 •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협조: 파일 다운로드 URL 제공(국립중앙도서관: 2021년 dCollection을 통한 전자학위논문 납본 일원화 추진) • 관련법령: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국립중앙도서관과 학위논문 법정납본 협력에 대한 법규는 없음)
일본	IRDB	NII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논문을 소속대학의 기관저장소를 통해 공표 • NII의 IRDB가 각 기관저장소에서 수집한 메타데이터를 국립국회도서관이 활용해 학위 논문 메타데이터와 전자 학위논문(원문)을 수집 • 관련법령: 학교교육법, 학위규칙, 관련 지침 등

34) British Library 홈페이지. <https://www.bl.uk/ethos-and-theses/about-ethos> (2023-09-22); <https://www.bl.uk/ethos-and-theses/faq-for-ethos-and-theses> (2023-09-22); Gould, S. (2016). UK theses and the British Library EThOS service: From supply on demand to repository linking.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44(1), 7-13.; 曾淑賢 (2019). 國家圖書館國內外學位論文送存制度之探討. *國家圖書館館刊*, 一〇八年第一期, 1-36.

35) British Library 홈페이지. <https://www.bl.uk/ethos-and-theses/your-theses> (2023-09-22)

36) Oxford University Bodleian Libraries 홈페이지. <https://libguides.bodleian.ox.ac.uk/digitaltheses/ORA> (2023-09-23)

국가	시스템	운영주체	대상	주요 사항
대만	대만박사 석사논문 지식부가가치 시스템	국가 도서관	석사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석사학위취득자는 전자 학위논문을 소속대학을 경유해 소속도서관과 국가도서관의 대만박사석사논문 지식부가가치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출 교육부 고시: 국가도서관이 유일한 학위논문 제출기관 관련법령: 학위수여법
프랑스	STAR	ABES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등은 의무적으로 전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 종합목록 SUDOC, 학위논문 검색엔진 thèses.fr 등과 연결 BNF와 ABES간 협력: 3년 단위의 협약 체결 관련법령: 교육법전, 관련 장관 명령
	ADUM	컨택트 협회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박사 수여대학에서 널리 채택한 박사과정 학업과 학위논문 작성 지원, 관련 행정업무를 위한 플랫폼 박사과정과 논문작성, 심사, 제출, 학위 후 지원 등에 학생, 대학원, 도서관, 기업 등의 협업 지원 ADUM-ABES간 협력/연계: BNF-ABES 연계로 연결 관련법령: 해당없음
미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이 기관저장소나 ProQuest ETD를 통해 학위논문 수집 : ProQuest는 논문저자의 저작권등록 대행 과정에서 LC로 제출 국가적인 전자 학위논문시스템 부재: 저작권등록시스템 활용 관련법령: 해당없음
캐나다	Theses Canada	LAC	석사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C와 대학간 협력으로 전자 학위논문 수집: LAC 컬렉션에 포함 대학의 기관저장소에 대한 하베스팅 위주로 수집: ProQuest ETD 시스템을 학위논문을 수집하는 대학은 자동으로 기관저장소와 Theses Canada에 전송 관련법령: 국가도서관 및 기록관법 (학위논문 수집 조항은 없고 국가기록유산 수집과 접근제공 조항에 근거)
호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국가도서관과 주립/준주립 도서관이 참여한 전자 납본시스템(NED) 운영 : 학위논문이 아닌 민간 출판물 대상 국가적 전자 학위논문시스템은 부재 관련법령: 해당없음
영국	EThOS	BL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BL와 영국 내 대학간 협력으로 전자 박사논문 수집 : EThOS가 기관저장소 하베스팅 + EThOS로 업로드 관련법령: 해당없음(관련 연구에서 학사논문은 법정납본 도서관법 미적용 대상 언급)

V.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학위논문에 대해 납본 또는 수집을 실시하고 한국, 일본, 대만,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8개국의 국가적인 학위논문 납본 또는 수집에 관한 법규와 국가도서관이나 고등교육 학술정보 유통기관, 대학도서관 등에 의한 관련 실무활동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연구결과의 의미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을 사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는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위논문에 대한 법정납본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첫째, 학위논문 납본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 정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행 도서관법의 법정납본 대상에 학위논문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지침에는 학위논문이 납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위논문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서관자료임을 명확히 하려면 국회도서관법과 같이 법정납본 관련 법령인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에 학위논문을 법정납본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법 제3조(정의) 중 제2호 도서관자료의 정의에 열거되는 자료유형에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행 도서관법 규정을 살펴보면, 학위논문이 명시화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법정납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학위논문은 납본대상인 '도서(book)'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도서의 정의³⁷⁾를 종합하면, 도서는 문학이나 학문 등의 목적으로 비교적 긴 분량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공중에 유통되기 위한 매체로 규정할 수 있어, 학위논문이 도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학위논문을 법정납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국가의 법규를 살펴보면 도서는 납본대상에 포함되지만 법규의 실무적 적용과정에서는 학위논문을 법정납본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더 우세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학위논문의 납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히 도서관법 규정에 납본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일반화된 전자 학위논문도 도서관법상 납본대상인 전자자료의 범주에 포함되어 납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자자료에 관한 정의³⁸⁾를 종합하면, 전자자료는

37) 도서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지를 제외하고 최소 49페이지의 비정기 간행물로, 해당 국가 내에서 발행되며, 공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1964년에 유네스코 도서와 정기간행물 생산에 관한 국제 표준 통계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concerning-international-standardization-statistics-relating-book-production-and> (2023-10-22)); 문학이나 학문에 관한 출판물이며, 상당한 분량의 글로 쓰인(또는 인쇄된) 메시지로, 공개적으로 유통(public circulation)되며 비교적 쉽게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만 견고한 매체에 기록(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생각이나 사실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나타낸 종이를 겹쳐서 한데 꿰맨 물건, 그림이나 서적, 글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인쇄 또는 전자 형태로 출판될 수 있도록 작성된 텍스트(캠브리지 사전); 문자 등이 쓰인 종이 등을 묶어서 장정한 것. 일반적으로는 인쇄되어, 공식적으로 간행된 것. 도서관에서는 문자나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하며, 전달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거나, 내용이 종이에 인쇄된 것이거나, 종이 가 떨어지지 않도록 묶음으로 장정하여 표지가 있는 것이거나, 일정한 분량(49면 이상)을 지닌 비정기간행물(한국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필사, 인쇄 또는 공백 상태의 종이 등의 낱장들이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함께 고정된 집합체(collection)(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문자나 도서 등이 기재된 낱장을 책자체(冊子體)로 제본한 자료. 현대에는 필사가 아니라 인쇄되며, 장정되고, 출판되고, 나아가 상당량의 페이지 수를 갖는 것(일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38) CD-ROM 드라이브와 같은 주변 장치를 직접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방식을 통해 컴퓨터가 읽고 조작할 수 있도록 인코딩된 데이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자료(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정보의 축적, 유통에 전자적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자료. 미디어의 기록형식에 의해 디지털 자료(일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

디지털 형태의 제작된 자료를 의미하며, 온라인을 통해 처리되는 자료(네트워크계)와 오프라인 형태의 물리적 매체에 저장되어 처리되는 자료(패키지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전자 학위논문은 법정납본 대상인 전자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국가의 법정납본 관련 법규에서는 전자자료를 법정납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자 학위논문을 법정납본 대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등교육 관련 법령이나 저작권 등록요건, 대학의 학위수여 관련 요건으로 수집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에서 학위논문을 납본대상으로 명시한다면 이리저리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학위논문의 납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위논문 공표에 관한 고등교육법 관련 정비도 필요하다. 조사대상 외국에서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에서 학위논문의 공표를 명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도서관이나 공적기관인 고등교육 학술정보 유통기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하지만 국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논문의 공표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의 법적 미비 상태를 개선하고 학위논문 공표와 학위논문의 수집과 제공을 연계하는 법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학위논문 공표대상에 석사학위논문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의 자료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현재 학위논문 법정납본에 관한 국회도서관법 및 관련 규칙, 국립중앙도서관의 규정과 지침 등을 감안할 때 석사학위취득 요건에 학위논문 작성이 포함된 경우에는 석사학위논문도 공표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국가 중 현재 대만과 캐나다의 석사학위논문을 국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법의 법정납본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도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을 사실상 납본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학위논문 공표에 관한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³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학위논문 공표의 기본 방법으로 학위논문에 대한 법정납본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등교육 학술정보 유관기관(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을 통한 국가적 시스템(예: KERIS의 dCollection)으로 전자적 제출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별도의 전자적 업로드 또는 인쇄본 등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위논문 공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려사항(예: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특허 출원 등)에 관한 조치(예: 공표유예, 공표면제, 저작권 이용동의, 기타 기술적 조치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전자출판물)

39) 훈령(訓令)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으로 분류된다. 예규(例規)는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고시(告示)는 행정 기관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의미함 (출처: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훈령> (2023-11-01)).

2. 학위논문에 대한 법정납본 강화를 위한 실무차원의 정비

첫째, KERIS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의 국가적 전자 학위논문시스템은 KERIS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규정된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사업 규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KERIS가 dCollection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전자 학위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의 법정납본으로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명시적 법규나 공식 업무협약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전자학위논문 납본 지원활동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각 대학으로 납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각 대학이 국립중앙도서관과 KERIS로 제공동의 회신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자 학위논문 납본 관련 활동이 그때 그때 공문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대만의 사례와 같이 관련 법규에 명문화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양측이 주기적 또는 장기적 협약을 체결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앞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위논문의 공표에 관한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의 제정시, 학위논문 공표 방법으로 KERIS의 dCollection을 제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으로의 법정납본 제공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하다. 협약과 관련해 프랑스의 국가도서관과 ABES는 학위논문 관련 협력에 관해 3년 단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간의 학위논문 납본 협력에 관한 협약도 주기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Collection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dCollection을 이용한 전자 학위논문 등록과정은 학위논문 저자와 도서관에만 업무처리가 집중되어 있다. 대학원 등에서 수행해야 할 학위논문 수정과 보완 등을 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 외의 관계자들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수 있다. 고등교육 서지기구인 ABES는 전자 학위논문 수집과 유통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학위논문 관련자들이 권한별로 접근할 수 있다. ABES의 STEP시스템은 박사학위논문 진행과정의 첫 번째 신고(논문 주제, 연구자 및 지도교수 정보 등)를 담당하며, 주로 박사과정 학생에 의해 작성된다. 전자 박사학위논문 제출과 아카이빙을 위한 STAR시스템은 논문심사기관(대학원 등) 직원과 박사과정 학생들만 접근 가능하다. 또한 프랑스 내 박사과정 운영 기관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ADUM은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주제 선정부터, 논문발표, 논문제출, 박사후과정 등의 과정에서 학위논문 저자와 도서관, 학과, 대학원, 기업체 등까지 각자의 업무에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ABES의 일부 시스템과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dCollection의 고도화 작업과정에서는 프랑스의 ABES와 ADUM 시스템의 사례를 반영하여 도서관 담당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과정(수정 과정 포함)에서 대학원의 관계자와 학위논문 저자들이 권한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 학위논문 중심의 납본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조사대상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전자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한 법정납본 또는 국가적 수집활동이 대세임을 알 수 있다. 대만의 학위논문 납본과 관련 연구(曾淑賢, 2019)에서는 전자 학위논문 제출과 수집의 장점에 대해, 학술 산출물의 완전한 보존, 학술 전파와 오픈액세스 촉진, 학술적 진보를 촉진, 연구 성과의 가시성과 영향력 향상, 학술자료의 기업 독점 방지, 학생들의 자료이용에 경제적 부담 해소,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분석 활용(연구주제의 변화 파악 등),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검색이 매우 편리, 학위논문을 위한 보관공간 절감, 직원의 작업시간 절감(색출, 정리, 복사 등), 통계수집 용이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업무처리가 과중한 실정이고 복수의 법정납본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위논문의 납본방식을 인쇄본에서 전자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의 공문을 통해서도 전자 학위논문 납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자 학위논문 위주의 납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제공을 위한 국가적 체계 개선과 dCollection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전자 학위논문의 법정납본이 기본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법정납본 국가도서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간의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나영, 오일석 (2016).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513-532.
- 김진호 (2022).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관리 및 납본, 관련 지침 제·개정.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144, 17-36.
- 김현희, 장우권, 광병희, 안태경 (2005).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 리포지토리의 운영 모형 개발: dCollection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2(3), 103-127.
- 김현희, 정경희, 김용호 (2006a). 대학 기관 리포지토리의 운영 현황 분석 및 레파지토리의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Collection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3(4), 17-39.
- 김현희, 정경희, 김용호 (2006b). 사용성 평가를 통한 dCollection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327-350.
- 노영희 (2009). 국내의 국가도서관 납본 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73-189.

- 서혜란 (2003).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20(1), 373-399.
- 윤희윤 (2002).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185-208.
- 윤희윤 (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3-52.
- 윤희윤 (2004a). 학위논문의 유통현황 및 관리시스템 분석. *정보관리연구*, 35(2), 1-40.
- 윤희윤 (2004b). 국내 학위논문의 표준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3), 99-123.
- 이승민 (2019).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73-93.
- 이충훈, 김승철, 이문형 (2023). [이슈기획] 학위논문 납본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대도협회지*, 24, 71-113.
- 정경희 (2007).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정책과 오픈엑세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4), 97-117.
- 정경희, 이호신 (2018). 사례로 보는 도서관 저작권. *과주: 한올아카데미*.
- 조용완 (2021). 주요국의 법정납본 법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369-393.
- 최현경, 이창수 (2004). 온라인 전자자료의 협동 목록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237-256.
-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연보 2021*. 진천군: 한국교육개발원.
- Afori, O. F. & Feldman, D. K-D. (2022). Reconceptualizing Open Access to Theses and Dissertation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33(1). <https://ir.lawnet.fordham.edu/iplj/vol33/iss1/2>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05). *Thèses & autres écrits académiques*.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Dépôt, S. (2022). Diffusion et Conservation des Thèses ou des Travaux Présentés (Articles 24 à 25)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32588117
- Dhanavandan, S., Mohammed E. S., & Nagarajan, M. (2012). Use of electronic resources at Krishnasamy College of Engineering & Technology Library, Cuddalore.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ejournal)*, 698. <https://digitalcommons.unl.edu/libphilprac/698>
- Dhérent, C. (2012). BNF et ABES: un partenariat revisité et consolidé. *Arabesques*, 65 <https://publications-prairial.fr/arabesques/index.php?id=1358&file=1>
- Gould, S. (2016). UK theses and the British Library EThOS service: from supply on demand to repository linking.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44(1), 7-13.
- Guide D'inscription du Doctorant de L'enscm (2018). Montpellier: Doctorat de l'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himie de Montpellier.

- <https://www.enscm.fr/app/uploads/2018/03/guide-de-linscription-en-these-2018.pdf>
Lariviere, J.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21413>
- Morales, C. (2017). ADUM, plus de visibilité pour les doctorants. Arabesques, 85
<https://publications-prairial.fr/arabesques/index.php?id=227>
- Schutt, R. (2022). Investigating the Social World: The Process and Practice of Research. Boston: Sage Publications, Inc.
- UNESCO (1964).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relating to book production and periodicals.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concerning-international-standardization-statistics-relating-book-production-and>
- Waaiker, C. J. F. et al. (2016). Stability and longevity in the publication careers of U.S. Doctorate Recipients. doi: 10.1371/journal.pone.0154741
- 曾淑賢 (2019). 國家圖書館國內外學位論文送存制度之探討. 國家圖書館館刊, 一〇八年第一期, 1-36.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ng-Wan (2021).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for legal deposit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3), 369-393.
- Choe, Hyun-Kyung & Lee, Chang-Soo (2004). A study on the cooperative cataloging system for online electronic resour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1), 237-256.
- Joung, Kyoung Hee (2007). A study on the copyright policy and open access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4), 97-117.
- Joung, Kyoung Hee & Lee, Hosin (2018). Copyright Questions and Answers for Librarians. Paju: Hanul Academy.
- Kim, Hyun Hee, Chang, Woo kwon, Kawk, Byeong-Heui, & Ahn, Taekyoung (2005).

- Implementing the management model of the institutional repositories for the efficient distribution infrastructure of national knowledge focusing on the dCollec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103-127.
- Kim, Hyun Hee, Jung, Kyoung Hee, & Kim, Yong-Ho (2006a).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ies (dCollection) based on its current stat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17-39.
- Kim, Hyun Hee, Jung, Kyoung Hee, & Kim, Yong-Ho (2006b).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systems in the university environment through usability tes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327-350.
- Kim, Jin-Ho (2022). Revised guidelines for management and deposi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s. *Bulleti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44, 17-36.
- Kim, Na-Young & Oh, Il Seok (2016).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of legal deposit and compensation of book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513-532.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2021 Education Statistics Yearbook. Jincheon-gun: KEDI.
- Lee, Chung-Hun, Kim, Seung-cheol, & Lee, Moon Hyoung (2023). [Issue Planing] How to improve the thesis deposit syste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24, 71-113.
- Lee, Seungmin (2019).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legal deposit in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sis and disser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73-93.
- Noh, Younghee (2009). Suggesting the reasonable legal deposit operating plan through analyzing the legal deposit proces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wor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73-189.
- Suh, Hye-Ran (2003). Legal deposit and preservation of digital materials in various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 373-399.
- Yoon, Hee-Yoon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2), 185-208.
- Yoon, Hee-Yoon (2003). A study on the reform model of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3-52.

Yoon, Hee-Yoon (2004a). Analysis of distribution situ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sis and dissertation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5(2), 1-40.

Yoon, Hee-Yoon (2004b) A study on developing the standardized management model of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3), 99-123.